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34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국민대학교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(1974.12.28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38호(2017.09.21.)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3일

서울특별시장

1. 변경결정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, 국민대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성북구 정릉동 855-2 일대에 위치한 제2캠퍼스의 보육동 및 교육연구동 신축계획을 반영한 세부시설 조성계획(기본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.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시설결정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 [세부시설 조성계획 (기본계획) 결정일]	
			기정	변경	변경후			
학교	대 학	합 계	205,674	-	205,674	-	-	
		제1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861-1 일대	167,743	-	167,743	1974.12.28. (서고 제196호)	2017.09.21. (서고 제338호)
		제2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855-2 일대	5,991	-	5,991		
		제3캠퍼스	종로구 평창동 147-2 일대	30,548	-	30,548	2015.11.19. (서고 제367호)	2015.11.19. (서고 제367호)
		제4캠퍼스	성북구 정릉동 711-1 일대	1,392	-	1,392	2017.09.21. (서고 제338호)	2017.09.21. (서고 제196호)

나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구역계획

캠퍼스	구 분	명 칭	연 번	면적 (㎡)	비 고
제1캠퍼스	관리	일반관리	①	51,484	경상대학 / 법과대학 / 사회과학대학
			②	8,182	기숙사
			③	19,766	공과대학 / 도서관
			④	30,941	예술·체육·과학기술대학 / 복지시설
	소 계			110,373	
	유지	외부활동	⑤	18,606	대운동장, 농구장, 테니스장
	보전	녹지보전	⑥	38,764	배후녹지
계			167,743		
제2캠퍼스	관리	일반관리	⑦	2,226	보육시설 → 보육동/교육연구동
	유지	상징경관	⑧	2,159	명원민속관
	보전	녹지보전	⑨	1,606	내부녹지
	계			5,991	
제3캠퍼스	관리	일반관리	-	10,498	서울시 고시 제2015-367호 (2015.11.19.) 세부조성계획 완료
	보전	녹지보전	-	20,050	
	계			30,548	
제4캠퍼스	관리	일반관리	⑩	1,392	기숙사
	계			1,392	
합 계				205,674	

2) 밀도계획(건폐율)

캠퍼스	구 분	밀도산정 기준면적(㎡)	법정건폐율(%)	사용건폐율(%)		관리건폐율(%)
				기정	변경	
제1캠퍼스	제1종 일반주거지역	43,603	60.0	12.1	12.1	20
	제1종 일반주거지역 (자연경관지구)	121,115	30.0	29.5	29.5	30
	계	164,718	38.0	24.9	24.9	30
제2캠퍼스	제1종 일반주거지역 (자연경관지구)	5,991	30.0	8.8	26.3	30
제3캠퍼스	제1종 전용주거지역	22,692	50.0	14.96	14.96	15.58
	제2종 일반주거지역	4,246	60.0			
	계	26,938	51.57			
제4캠퍼스	제1종 일반주거지역	1,392	60.0	41.1	41.1	50
합 계		199,039	39.7	23.2	23.7	28

3) 밀도계획(용적률·높이)

캠퍼스	구역 구분	용적률(%)					관리높이(m)	비 고
		법정 용적 률	사용용적률		이전 용적률	관리 용적률		
			기정	변경				
제1캠퍼스	①	150.0	149.65	149.65	-	150.0	- 지표로 부터 최대 20m 이하	일반관리구역
	②	150.0	139.24	139.24	-	140.0		
	③	150.0	207.10	207.10	60.0	210.0		
	④	150.0	123.72	123.72	-	150.0		
	⑤	150.0	0.27	0.27	-	5.0	- 지표로 부터 최대 8m 이하	외부활동구역
	⑥	150.0	-	-	-	-	-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녹지보전구역
제2캠퍼스	⑦	150.0	9.19	65.51	-	80.0	- 지표면으로부터 +12m 이하 - 서울시지정 민속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	일반관리구역
	⑧	150.0	18.65	18.65	-	20.0	- 지표로 부터 최대 8m 이하	상징경관구역
	⑨	150.0	-	-	-	-	-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녹지보전구역
제3캠퍼스	-	126.0	95.39	95.39	-	100.0	- 128m(해발고도) 이하	일반관리구역
	-	10.9	-	-	-	-	-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	녹지보전구역
제4캠퍼스	⑩	150.0	149.85	149.85	-	150.0	- 지표로 부터 최대 16m 이하	일반관리구역

※ 구역별 높이계획 : 고시도면 참조

다. 변경 건축물 조서

구역	건물명	건축면적(m ²)		건축연면적(m ²)		지상층면적(m ²)		층수(지하)		비고
	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	제1종일반주거 (자연경관지구)		기정	변경	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	
제2 캠퍼스	보육시설	119.40	-	314.50	-	204.55	-	2(1)	-	철거
	보육동	-	289.70	-	804.81	-	386.62	-	2(2)	신축
	⑦ 교육연구동	-	881.20	-	1,990.04	-	1,071.56	-	2(1)	신축
	소 계	119.40	1,170.90	314.50	2,794.85	204.55	1,458.18	-	-	
증감		증) 1,051.5		증) 2,480.35		증) 1,253.63				

※ 건축물의 규모,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(변경) 상세내용은 결정도면에 의함

